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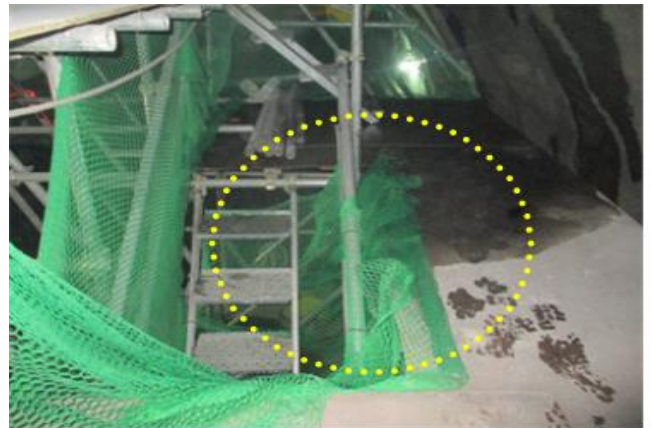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(1공구) 건설공사)

- 점검일시 : 2019.11.01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## 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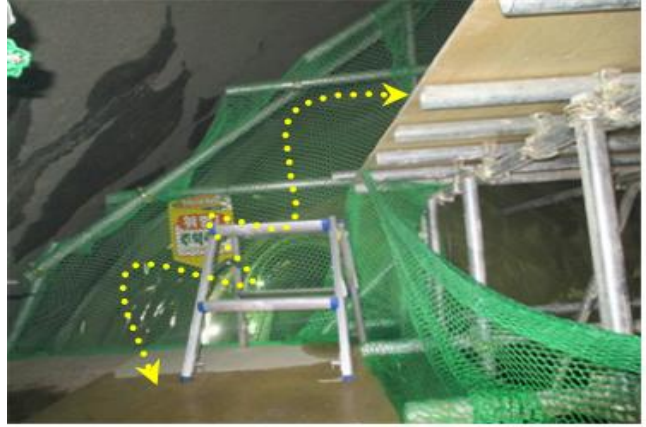
-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공기정화시설 터널작업 (하선방향) 구간 방수대차 상부에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바람
  - 방수대차 일부구간에 안전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.
  - 또한, 작업이 중단된 방수대차 상부에 안전대가 방치되어 있는 등 작업자 개인보호구 관리가 미흡하니 추락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보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상선방향 방수대차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구간에는 가설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형 말비계가 비치되어 있으나 작업자 이용시 미끄럼등으로 인한 전도 및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작업전 보완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개착구간 일부 H파일 수직도가 불량한 곳에 대하여 보완을 실시하였으나, 향후 추가 굴착이 진행될 경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·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개착구간, 국회대로 공원화공사 간섭구간에 중간말뚝이 장기간 무보강 형태로 지지되어 있고, 향후 인접현장 주변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작업구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찰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보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터널구간 라이닝폼 조립구간 상부 단부에 소형 기계 기구 등이 방치되어 있어 하부로 낙하 우려가 있으니 낙하우려가 없는 곳으로 이동 또는 제거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동구 기계타설 작업용 몰드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으나, 균형상태가 불안전하고 받침목이 암버력으로 조치 되어있어 전도 우려가 매우 높으니 보안을 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라이닝폼 제작구간에서는 가설 전선 주변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중으로 불꽃비산으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